

연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016. 9. 8] 조례 제3342호]

일부개정 2017. 9. 14 조례 제3419호
일부개정 2018. 1. 3 조례 제3439호
(연천군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9. 9. 25 조례 제3603호
일부개정 2021. 12. 24 조례 제3780호
일부개정 2023. 12. 28 조례 제3918호
일부개정 2025. 3. 6 조례 제403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4, 2023. 12. 28>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

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 2천제곱미터 이내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4의2. 삭제 <2025. 3. 6>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 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8.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9.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을 말하며, 인정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

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고객지원센터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 3>

④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건축·소방·도로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시장 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전통시장의 인정

제6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 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전통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 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절차) 군수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9. 25]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군수는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16조(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사람(군수는 제외한다)은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8조(임시시장의 개설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신고한 경우
2. 임시시장 신고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5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19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20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정부와 군으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 19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려는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성립된 법인인 상인회는 변경등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상인회의 등록취소 등) ① 군수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회가 법 제65조제8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상인,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65조제8항제4호의 동의 또는 동의를 철회를 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에 철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사유를 기재하고 날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9. 25]

제23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연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서류 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2025. 3. 6>

제6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27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군수는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27조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 삭제 <2017. 9. 14>

제7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30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군수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갖추어 두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군이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군·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1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연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3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② 위탁의 취소 또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

설, 자료, 장비 및 비품은 연천군에 귀속된다.

제34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9. 9. 25]

제3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장 시장정비사업 <신설 2019. 9. 25>

제37조(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동의를 철회)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에 철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사유를 기재하고 날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9. 25]

제9장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 <신설 2021. 12. 24>

제3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연천군수는 직권으로 또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 3. 6>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4]

제3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6>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6>

1.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2.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골목형상점가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본조신설 2021. 12. 24]

제4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9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4]

제10장 보칙 <신설 2021. 12. 24>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4>

[중전 제38조에서 이동 2021. 12. 2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기 등록된 인정시장 및 상인회는 이 조례에 따라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연천군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② 연천군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③ 연천군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7. 9. 14 조례 제3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3 조례 제3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25 조례 제3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4 조례 제3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부칙 <2023. 12. 28 조례 제3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3. 6 조례 제4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 12. 24>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

골목형 상점가 개요	명 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토지 면적: m ² , 건물 연면적: m ² , 영업장 면적: m ² , 점포 수: 개		
	구역 상세	주소	면적(m ²)	점포 수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연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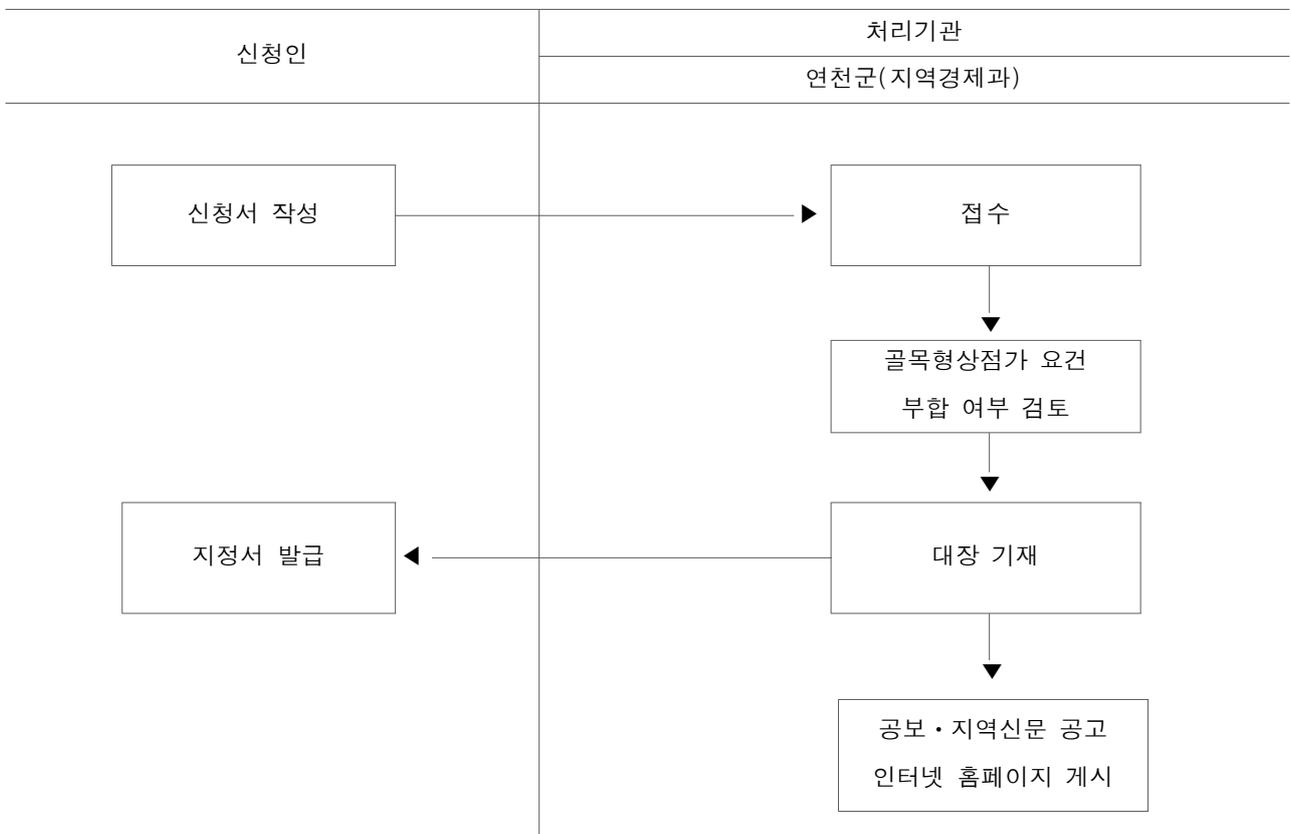
연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8조제1항에 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 (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 12. 24>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1. 상점가 명 :
2. 대표자 성명 :
3. 소재지 :
4. 면적/점포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제2조의2 및 「연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